

<별표 2>

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(제12조 관련)

구 분		단 위	사용료 등	부 과 기 준
직업  교육	일반과정	1인 1월	15,000원	○ 주당 15시간 이내
	전문, 중·고급과정	1인 1월	100,000원 이내	○ 강사료와 수강료 연동 (시장이 교육수요를 참작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는 당해과정의 총 수강료 수입이 당해 과 정의 강사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00,000원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음)
생활문화		1인 1월	15,000원	○ 1일 3시간 이내, 주 1일 기준
특별 프로그램		1인 1월	실 비	○ 강좌개설에 따른 직접경비를 참여 예 상인원 기준으로 산출, 적용
아동 교실 (방과후 교실 등)		1인 1기	10,000원	○ 1기당 정액 부과
보육실 사용료		1인 1월	7,500원	○ 교육수강시간에 한함
수영장 사용료	수강료	1인 1월	40,000원	○ 월 20시간 이내
	자유이용료	1인 1회	2,500원	
주차장 사용료		1대 1월	30,000원	○ 주차장을 외부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별도약정에서 정한 사용료 징수
		1대 1시간	1,000원	
시 설 사용료	강당	1회 1시간	10,000원	
	교육실 및 회의실	1회 2시간	5,000원	
창업보육 지원시설 사용료	창업보육실	m <sup>2</sup> 당/월		○ 보증금 1,000,000원 별도 ○ 관리비 별도
	창업부스	부스당/월		○ 보증금 500,000원 별도

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  
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“재단법인서울복지재단”(이하 “재단”이라  
한다)을 설립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

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설립)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4조(재단의 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의 심사
2.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서비스 평가
3.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
4. 복지시설 회계절차 개선 및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·보급
5. 복지프로그램 개발·보급
6. 복지시설간 연계·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
7. 복지시설 종사자교육
8.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상담·자문서비스
9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서 “복지시설”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,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

제6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2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
3. 이사회에 관한 사항
4. 회계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해산에 관한 사항
7.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

②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며, 대표이사를 겸한다.

③ 이사장(대표이사)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,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, 그 업무를 통할한다.

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통할한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직원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
제11조(출연금 교부) 시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12조(수익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·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제14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15조(사업계획서, 결산서 등의 제출) ①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무원의 파견)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제18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